

##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9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상 규정된 모든 규제업무를 등록 및 공표하고,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시 이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하고,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위원회의 구성 :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구성원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함.

- 공무원 : 규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·과장
- 민간인 :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위촉함.

나. 위원회의 기능

-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시 이에 대한 심사
- 규제의 등록과 공표
-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, 평가에 관한 사항등

다. 기타

-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

### 3. 관계법령

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

##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규제의 신설·강화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
4.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위원중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선임한다.

③위원중 공무원은 규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·과장으로 위촉하고, 민간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과,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전문가등을 위원회에 출석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.

제7조(규제신고센터의 설치)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등)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